# 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1998. 8. 14

## 주 요 골 자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주택관련 법령의 체계를 단순화함(제13조 내지 제13조의6)

나. 종전에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가입한 날부터 5년 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날부터 2년후로 앞당기고, 종전에는 1회로 되어있던 예치금액의 변경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청약예금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14조의5제2항제3호)

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함(제17조제2항제2호). 〈건설교통부 제공〉

## 개 정 이 유

청약예금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약예금의 예치금액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자재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산정방법을 개선하며, 법령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 규칙과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구획도로"를 "국지도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6조제1항제10호"를 "영 제6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한다.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 다만, 기술자로 고용한 후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용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기술자의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3호중 "기술자격취득자"를 "기술자"로 하고, 동조 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설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전기분야 · 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다. 건축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사본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영 별표3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1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의 부표에 규정된 면허·인가·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 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일부 면제지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영 별표 3의 부표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13조의3(매입필증의 교부)** ①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사무취급기관(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 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 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 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매입필증의 재발행)** ①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16조

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재발행 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제13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제13조의5(매입필증의 접수)** ① 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②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매입목적

④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제14조제2항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를 "면허권자등"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의5제2항 단서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이 겨우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을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4.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제14조의6제2항중 "시·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제20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 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공용면적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및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법 제33조제1항 후단"으로, "제3호·제6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증가로"를 "증감으로"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제22조의6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기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영 제4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당첨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사본
2.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②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2.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합 또는 부실시공 등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유(영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4.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5.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③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한다.

제3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착공 및 준공확인서"를 "착공확인서 및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10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중 "(국민주택개권매입필증 징구의무자)"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5호중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전용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면제되는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면제항목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
| 1. 외국인 투자기업 | 1.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 1.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br>2.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 2. 금융 기관 | 1.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br>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 1.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br>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 1.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br>2. 금융기관 상호 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면제항목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
| | | 3. 수산업협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br>4.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3. 한국자원 재생공사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 1.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br>2.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 주무부장관ㅇㅇ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
| 4. 언론기관 |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br>가. 일반·특수 및 외국어일간신문<br>나. 통신<br>다. 일반 및 주간신문<br>라. 잡지<br>2.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속국<br>3. 종합유선방송법 | 1.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br>2.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 | 1. 법인등기부등본<br>2.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

|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면제항목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
|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br>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br>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br>2.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br>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br>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br>2.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br>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

|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면제항목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
| 6. 재건축 조합 및 재개발조합 |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br>1.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br>2.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 대지의 본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등이 발행하는 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확인서 |
| 7. 신공항 시설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 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 등기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 |
| 9. 신축주택 매입자 | 1998년 5월 22일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m'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 신축주택매입자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채권매입 금액의 50%를 감면한다) |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

〔별표 1의3〕

##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건축물의 범위(제13조의2관련)

| 구분 | 대상 | 범위 |
|---|---|---|
| 1. 공장용 건축물 | 가. 읍·면지역<br>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br>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 가. 공장<br>나.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실<br>다. 종업원용 기숙사 |
| 2. 교육용 건축물 | 교육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가. 교사<br>나. 사무실 및 부속시설<br>다. 학생용 기숙사 |
| 3. 종교용 건축물 | 가. 교회<br>나. 사찰<br>다. 기타 종교용 건축물 | 가. 당해 종교용 건축물<br>나.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사무실·관리사무실<br>다. 85㎡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 |
| 4. 자선용 건축물 |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건축물<br>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 가. 당해 자선용 건축물<br>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5. 공익용 건축물 | 일반대중의 이용에 공하는 기념관·전시관·도서관·동물원·식물원·집회소·공회당·대피시설·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 가. 당해 공익용 건축물<br>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6. 축산용 건축물 |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가. 당해 축산용 건축물<br>나. 부속시설 |
| 7. 농업용 건축물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가. 당해 농업용 건축물<br>나. 부속시설 |

[별지 제23호의2서식]

<table>
<tr><td colspan="3">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td><td>처리기간<br>3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td><td></td></tr>
<tr><td>성 명<br>(상모 및<br>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매 입 대 상 항 목</td><td></td><td></td></tr>
<tr><td colspan="2">매 입 대 상 금 액</td><td></td><td></td></tr>
<tr><td colspan="2">연 체 금 리</td><td></td><td></td></tr>
</table>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항목중 일부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증거자료 1부

2805-01-17E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

| 일련번호 | 신청인(매입자) | | 면제대상 항 목 | 면제금액 | 면제근거 | 면제사유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2805-01-6C 190㎜×268㎜

78. 9.0 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4서식〕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 | | 처리기간<br>즉 시 |
|---|---|---|---|---|
| 신청인 | 주 소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채 권 | 기호 및 번호 | | | |
| | 금 액 | | | |

| 정정사항 | | |
|---|---|---|
| 항목별 | 당 초 | 정 정 |
| 매입자 성명 | | |
| 매입목적 | | |
| 제출기관 | | |
| 발행일자 |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매입필증 1부

2805-01-17E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5서식]

<table>
<tr><td colspan="3">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td><td>처리기간<br>3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6">채 권<br>및<br>매 입 필 증</td><td>기호 및 번호<br>(권 종 별)</td><td colspan="2"></td></tr>
<tr><td>매 입 액</td><td colspan="2"></td></tr>
<tr><td>매입의목적</td><td colspan="2"></td></tr>
<tr><td>제 출 기 관</td><td colspan="2"></td></tr>
<tr><td>발 행 점 포</td><td colspan="2"></td></tr>
<tr><td>발 행 일자</td><td colspan="2"></td></tr>
</table>

위 기재사항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분실하였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재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구긴주택채권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1부

2805-01-17E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6서식〕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신청서 및 증명서 | | | | 처리기간 | |
|---|---|---|---|---|---|
| | | | | 3 일 | |
| 신청인 | 주 소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채권 및 매입필증 | 기호 및 번호 (권 종 별) | | | | |
| | 매 입 금 액 | | | | |
| | 매입의 목적 | | | | |
| | 제 출 기 관 | | | | |
| | 발 행 점 포 | | | | |
| | 발 행 일자 | | | | |

위 기재사항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귀 기관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분실공고문 1부

위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2805-01-17E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7서식]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 일련번호 | 신청인(매입자) | | 채권 및 매입 필증 | | | 매입금액 | 사 유 |
|---|---|---|---|---|---|---|---|
| | 주 소 | 성 명 | 권 종 별 | 기호 및 번호 | 매 입 금 액 | | |
| | | | | | | | |

2805-01-3C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8서식]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

| 일련번호 | 신청인 | | 채권 및 매입 필증 | | | 사유 |
|---|---|---|---|---|---|---|
| | 주소 | 성명 | 권종별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 | |
| | | | | | | |

2805-01-3C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9서식]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소인

가. 소인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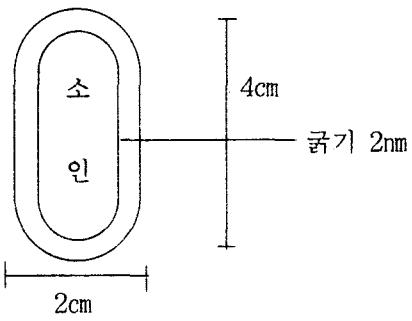


나. 소인의 위치 : 매입필증 우측상단에 적색 도는 청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

〔별지 제23호의10서식〕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상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매입목적 | 신청인(매입자) | | 채권 및 매입 필증 | | 사유 |
|---|---|---|---|---|---|---|---|
| | | | 주소 | 성명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 | |
| | | | | | | | |

2805-01-3C
78. 9. 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주택회보